

[별표 2] <개정 2016. 12. 30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부과원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4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6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7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,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
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 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호	100	300	500
나.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2호	100	300	500
다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 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3호	100	300	500
라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경 우	법 제31조 제1항제4호	50	100	200
마.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분을 위 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5호	100	300	500
바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6호	50	100	500